강릉시의회 공고 제2023-56호

「강릉시 걷는 길 조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」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시민들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「강릉시의회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」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

2023년 12월 21일

강 릉 시 의 회 의 장

강릉시 걷는 길 조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

1. 개정이유

맨발걷기 조성과 이를 추진할 근거를 마련하여 맨발걷기를 활성화함으로써 시민의 건강증진을 도모하고자 함

2. 주요내용

가. 맨발걷기길 홍보 및 교육(안 제6조제1항제3호라목)

나. 맨발걷기길 활성화를 위한 사항(안 제6조제1항제7호)

다. 맨발걷기길의 조성에 필요한 사항(안 제7조의2)

3. 의견제출

이 조례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

1월 1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을 작성하여 강릉시의회의장(참조: 의회사무국 행정전문위원/☎033-640-4033)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.

가.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(찬·반 여부와 그 사유)
나. 제출자의 성명(법인·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성명), 주소, 전화번호
다. 기타 의견

[보내실 곳]

- ❍ 우 편: (25522) 강원도 강릉시 강릉대로 33(홍제동) 강릉시의회 의회사무국
- ❍ 이메일: rhdchfhd@korea.kr
- ❍ 팩 스: 033-640-4070

붙임 1. 강릉시 걷는 길 조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.
2.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제출서 1부. 끝.

[붙임 1]
강릉시 조례 제 호

강릉시 걷는 길 조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강릉시 걷는 길 조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조 중 “시민”을 “강릉시민”으로, “걷는 길”을 “강릉시 걷는 길”로 한다.

제2조를 삭제한다.

제3조제1항 중 “시민(시의 주민을 말한다. 이 조례에서 같다)”을 “시민”으로 한다.

제3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제3조의2(다른 조례와의 관계) 강릉시 걷는 길(이하 “걷는 길”이라 한다) 조성 및 운영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 따른다.

제4조제2항제1호 중 “「공공디자인의 진흥에 관한 법률」 제2조제1호”를 “「공공디자인의 진흥에 관한 법률」 제2조제1호”로 하고, 같은 조 제3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.

1. 「산림문화·휴양에 관한 법률」 제2조제6호의 숲길

제6조제1항제3호에 라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, 같은 항 제5호를 다음과 같이 하며, 같은 항 제7호를 제8호로 하고, 같은 항에 제7호를 다음과

같이 신설한다.

라. 맨발로 산책이 가능하도록 조성한 길(이하 “맨발걷기길”이라 한다) 활성화에 필요한 홍보 및 교육

5. 생태·문화탐방 등 지역의 지리적·문화적 체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하여 지정한 강릉시 명품길(이하 “명품길”이라 한다)의 지정·운영

7. 맨발걷기길 조성·확충 및 정비

제7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.

① 시장은 걷는 길 중에서 명품길을 지정·운영할 수 있다.

제7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제7조의2(맨발걷기길의 조성 등) ① 시장은 맨발걷기 활성화를 위해 걷는 길 중에서 맨발걷기길을 조성할 수 있다.

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맨발걷기길을 조성할 경우 인체에 해롭지 않은 친환경 소재를 사용하여야 한다.

제11조 중 “,「강릉시 포상 조례」”를 “,「강릉시 포상조례」”로 한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·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시민의 건강증진과 지역관광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지역역사·문화·자연환경 등을 연계한 걷는 길 조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	제1조(목적) ------- 강릉시민---------- ---------- ---------- 강릉시 걷는 길 - ---------- ----------.
제2조(적용범위) 걷는 길 조성 및 운영에 관해서는 법령에서 정한 것이나 다른 조례에서 달리 정한 사항 외에는 이 조례에 따른다.	<삭 제>
제3조(책무 등) ① 강릉시장(이하 “시장”이라 한다)은 강릉시(이하 “시”라 한다)의 쾌적한 환경에서 시민(시의 주민을 말한다. 이 조례에서 같다) 및 관광객(이하 “시민 등”이라 한다)에게 건강증진과 관광자원 등을 체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고 적극 추진해야 한다.	제3조(책무 등) ① ---------- ---------- ---------- --- 시민 ---------- ---------- ---------- ---------- ---------- ---------- ----------.
② (생 략)	② (현행과 같음)
<신 설>	제3조의2(다른 조례와의 관계) 강릉시 걷는 길(이하 “걷는 길”이

	라 한다) 조성 및 운영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 따른다.
제4조(조성·원칙 및 범위) ① (생략) ② 걷는 길의 조성은 다음 각 호의 원칙에 따른다. 1.「공공디자인의 진흥에 관한 법률」제2조제1호에 따른 공공성과 심미성의 향상 2. ~ 4. (생 략) ③ 걷는 길의 조성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. 1.「산림문화·휴양에 관한 법률」제2조제6호의 숲길 2.·3. (생 략) ④ (생 략)	제4조(조성·원칙 및 범위) ① (현행과 같음) ② ----------. 1. 「공공디자인의 진흥에 관한 법률」 제2조제1호---------- 2. ~ 4. (현행과 같음) ③ ----------. 1. 「산림문화·휴양에 관한 법률」 제2조제6호의 숲길 2.·3. (현행과 같음) ④ (현행과 같음)
제6조(활성화사업 추진 및 지원) ① 시장은 걷는 길의 원활한 이용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(이하 “활성화사업”이라 한다)을 추진할 수 있다. 1.·2. (생 략) 3. 시민 등의 이해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목의 방법에 따른	제6조(활성화사업 추진 및 지원) ① ----------. 1.·2. (현행과 같음) 3. ----------

홍보	--
가. ~ 다. (생 략)	가. ~ 다. (현행과 같음)
<신 설>	라. 맨발로 산책이 가능하도록 조성한 길(이하 “맨발걷기길”이라 한다) 활성화에 필요한 홍보 및 교육
4. (생 략)	4. (현행과 같음)
5. 명품길 지정·운영	5. 생태·문화탐방 등 지역의 지리적·문화적 체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하여 지정한 강릉시 명품길(이하 “명품길”이라 한다)의 지정·운영
6. (생 략)	6. (현행과 같음)
<신 설>	7. 맨발걷기길 조성·확충 및 정비
7. (생 략)	8. (현행 제7호와 같음)
② (생 략)	② (현행과 같음)
제7조(명품길 지정·운영) ① 시장은 생태·문화탐방 등 지역의 지리적·문화적 체험기회를 제공하기 위하여 걷는 길 중에서 강릉시 명품길(이하 “명품길”이라 한다)을 지정·운영할 수 있다.	제7조(명품길 지정·운영) ① 시장은 걷는 길 중에서 명품길을 지정·운영할 수 있다.
②·③ (생 략)	②·③ (현행과 같음)
<신 설>	제7조의2(맨발걷기길의 조성 등)

	① 시장은 맨발걷기 활성화를 위해 걷는 길 중에서 맨발걷기 길을 조성할 수 있다.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맨발걷기길을 조성할 경우 인체에 해롭지 않은 친환경 소재를 사용하여야 한다.
제11조(준용) 활성화사업 지원보조금의 신청·교부·정산, 제9조 및 제10조에 따른 업무의 위탁, 표창 등에 필요한 사항은 「강릉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」,「강릉시 사무의 위탁 조례」,「강릉시 포상 조례」에 따른다.	제11조(준용) ---------- ---------- ---------- ---------- ---------- ---------- ---,「강릉시 포상조례」----------.

[붙임 2]

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제출서

□ 법규명:

○ 성명(단체명) :

○ 주　　소 :

○ 연 락 처 :

제·개정안 내용	의　　견	비 고